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11138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111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합5376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삼부토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4. 11. 21.

판결 선고2015. 1. 3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합5376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1,465,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9,485,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거나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서 제12면의 '5.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 중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항' 부분(제12면 제11행~제13면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계약보증금 14억 2,780만 원에서 석현개발이 대동개발로부터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 원금 2억 2,47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84,303원(= 2억 2,475만 원 × 6% × 43/366, 채권양도 통지일인 2011. 9. 16.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일로서 상계적상일인 2011. 10. 2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원 미만 버림) 합계 226,334,303원(= 224,750,000원 + 1,584,303원)이 상계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자인하면서 나머지 1,201,465,697원(= 1,427,800,000원 - 226,334,3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원리금을 상계하고 남은 계약보증금 1,201,465,6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서 제12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갑 제4호증의 2"를 "을 제4호증의 2"로, 제20면 제6행 "2011. 1. 16."을 "2012. 1. 16."로 고치고 별지 목록 제24면 표 아래에 '끝'을 추가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약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는 대동개발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채권(이하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 채권'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 대동개발 및 대동개발의 하수급인들은 2011. 11. 8. 원고가 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위 하수급인들은 각자의 대동개발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일체 합계

3,368,517,364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와 대동개발은 원고의 대동개발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과 대동개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 채권 1,265,113,360원 전부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대동개발의 상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 채권은 피고가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2012. 1. 16. 이전에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는 효력이 없다.

2) 대동개발이 용상건설에 양도한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지만 선의의 양수인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어 용상건설이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3억 5,000만 원은 대동개발이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에는 자재대금도 포함되고, 원고가 2012. 1. 16. 이전에 대동개발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자재비는 모두 232,432,860원이므로, 위 금액 역시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하도급대금 채권의 양수 및 상계합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동개발이 부도 처리되자 대동개발의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사실, 대동개발이 2011. 9. 19.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동개발의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하수급인들로부터 대동개발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전부를 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하수급인들이 원고에게 각자의 하도급채권을 양도한 사실, 대동개발이 원고와 하수급인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하도급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동개발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원고와 하수급인들 사이의 위 하도급채권 양도를 승낙하고 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대동개발이 원고가 양수한 위 하도급대금 채권과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 채권 전액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대동개발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 채권 전액에 관한 상계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용상건설에 양도한 미지급 기성금 채권 3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양도금지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양도가 금지된 채권의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선의로 추정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한 채권은 양도가 금지되지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문언과 규정 형식으로 보아 양수인의 선의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용상건설이 위 채권의 양도금지 사실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달리 용상건설에 대한 위 미지급 기성금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자재비 232,432,860원에 관하여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드는 부품을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한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에 관하여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조항이 준용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원고가 제출한 대동개발 체불금 지급현황표)에 따르면,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자재비는 모래, 화약비, 가섬유,

골재대, 오일, 시멘트 또는 잡자재 등으로서 건설 원자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원자재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용 부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가 위 비용을 지급한 하수급인들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자재비용을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계 가능한 미지급 기성금의 범위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는 미지급 기성금은 대동개발의 미지급 기성금 1,265,115,360원에서 ① 미정산 선금금 140,360,000원, ② 석현개발에 양도하였다가 상계로 소멸한 공사대금 224,750,000원, ③ 원고가 대동개발의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한 대금 150,519,677원 합계 515,629,677원(= 140,360,000원 + 224,750,000원 + 150,519,677원)을 공제한 749,485,683원(= 1,265,115,360원 - 515,629,677원)이 된다.

5) 원고의 계약보증금 채권 잔액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보증금 채권 잔액은, 앞서 본 원고의 계약보증금 채권 1,201,465,697원에서 이 사건 미지급 기성금의 잔액 위 749,485,683원이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일인 2011. 10. 28.에 소급하여 상계되고 남은 451,980,014원(= 1,201,465,697원 - 749,485,683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1,980,0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2.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문정일

판사구자현

별지